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 송옥주・유동수・정춘숙

박찬대 • 박용진 • 안호영

김홍걸・박 정・서삼석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(이하 "사업용차량")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(2017. 7. 18 시행)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 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 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'비상자동제동장치'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의 제목 중 "차로이탈경고장치의"를 "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차로이탈경고장치를"을 "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"로 한다.

제65조제1항제4호 중 "차로이탈경고장치를"을 "차로이탈경고장치 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의2(<u>차로이탈경고장치의</u>	제55조의2(<u>차로이탈경고장치 등</u>
장착)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	<u>의</u> 장착)
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	
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	
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	
적합한 <u>차로이탈경고장치를</u> 장	차로이탈경고장치 및
착하여야 한다.	비상자동제동장치를
제6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65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	
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	
다.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. 제55조의2에 따른 <u>차로이탈</u>	4 <u>차로이탈</u>
<u>경고장치를</u> 장착하지 아니한	경고장치 또는 비상자동제동
자	<u> 장치를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